

2020.02.

##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관련 법적 유의사항

### I. 서론

2019년 12월 8일 중국 호북성 우한 지역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2020년 2월 4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국에서만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30일 WHO는 중국의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로 선언했습니다. 다만 WHO는 비상사태로 선포는 하면서도, 현재정보를 기초로 했을 때 무역이나 사람들의 교류 제한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WHO의 선포 이후에 많은 나라의 항공사들이 중국의 북경, 상해, 무한, 항주, 성도등의 도시의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다른 나라로의 전염에 대한 우려와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교류와 경제활동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하 “본 사태”라고 약칭합니다)와 관련하여 현재 휴무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본 뉴스레터에서는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 II.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관련 법률상 주의사항

#### 1. 업무재개 관련 노무상 주의사항

##### (1) 춘절 법정연휴 연장과 업무재개(复工) 연장 개황(상해시 기준)

중국의 국무원 사무처는 2020년 1월 26일 반포한 “2020년 춘절연휴 연장 통지”《关于延长2020年春节假期的通知》를 통해 2020년 춘절의 법정공휴일을 2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2월 3일부터 정상 출근 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원은 이러한 전국적인 조치에 추가하여 각 지방 정부가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상해시 인민정부는 2020년 1월 27일 “상해시 기업의 업무재개 연장과 학교개학에 관한 통지”《关于本市延迟上海市企业复工和学校开学的通知》를 통해 상해시 관할내의 각 기업은 2월 9일 24시 이전에는 업무재개를 하지 못하도록 공포하면서, 예외적으로 도시 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업종), 전염병 상황 방공 필수영역(의료기계, 약품, 방호품 생산과 판매 등 업종), 일반생활필수사업(수퍼마켓, 식품생산과 공급 등의 업종), 기타 중요한 민생 관련 산업의 기업은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조건으로 2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업무재개 심사보고제도를 통해, 특별한 사유로 2월 10일 전에 업무를 재개해야 하는 기업은 관련 설명자료(외부에서 상해로 복귀한 직원의 이동정보상황 포함), 전염병 상황에 대비한 예비방안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등을 구비하여 해당 관할 지역 전염병 상황 방공지휘부 또는 산업단지에 보고하고, 심사 승인(비준) 후에 업무재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구 전염병 상황 방공지휘부 사무처에 신고(비안)를 하여야 하고, 규범에 위반하는 상황 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생산중단을 명하고, 규정에 따라 기업의 관련 책임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할 수 있으나, 직원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추가근무로 보아 대체휴가 또는 200%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업무재개 연장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대우는 각 지방마다 상이하므로, 각 기업은 소재지 관할 정부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2) 사용자가 사전에 업무재개를 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전염병예방치료법”《传染病防治法》 제42조 제1항은 전염병이 폭발, 유행할 때에는 헌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즉각 역량을 결집하여 예방, 통제예비방안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하고, 전염병의 전파경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일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생산중단, 영업중산, 수업중단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30조는 전염병예방치료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방역기구의 전염병예방치료법의 예방 통제조치의 집행을 거부하여 갑류 전염병의 전파 또는 전파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기업은 벌금에 처하고 직접담당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을류 전염병으로 분류되나 갑류 전염병 예방과 통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업무재개를 하여 바이러스의 교차 감염과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사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3) 업무 재개 이후의 사업장의 위생보건 책임

“전염병예방치료법”《传染病防治法》제77조는 기업과 개인이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전염병의 전파, 유행,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긴급사건대응법”《突发事件应对法》제22조는 모든 기업은 안전관리제도를 수립 내지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각 안정예방조치의 실시상황을 검사해야 하고, 적시에 사고위험을 제거해야 하며, 해당 단위에 존재하는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갈등의 격화를 방지하고 사태의 확대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발생가능한 긴급사건과 시행하는 안전예방조치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적시에 소재지의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긴급사건대응법 제3조는 본법의 긴급사건(突发事件)이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또는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응급처리조치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공위생사건과 사회안전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 사태에 있어서도 전염병예방치료법과 긴급사건대응법에 따라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관한 응급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관련 기업이 1) 규정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긴급사태를 야기한 경우, 2) 이미 발생한 긴급사건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적시에 제거하지 않아 심각한 긴급사건을 발생시킨 경우, 3) 응급설비, 일상적인 위생유지보호활동, 검측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긴급사건을 발생하게 하거나 긴급사건의 위험성을 확대시킨 경우, 4) 긴급사건의 발생 이후에 적시에 응급구조작업을 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소재지의 인민정부가 생산중단, 영업중단, 허가증 또는 영업집조의 일시효력정지, 말소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치안관리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나아가 민형사적 책임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4)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에 대한 전염병 관련 개인정보 수집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제8조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노동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노동자는 사실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련 정보 역시 노동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파악할 권리가 있고 노동자는 이에 대해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춘절연휴기간, 업무재개 연기 기간 동안에 집중 전염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통과하였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 방역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공개에 대해서는 다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5) 복귀한 노동자가 환자로 밝혀진 경우의 조치

노동자가 확진을 받아 격리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가료를 해야 하며, 확진자나 의심환자로 밝혀진 경우에는 “전염병예방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인근의 질병예방통제기구 또는 의료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도 의심환자도 아니라고 해도 회복성을 방문하였던 노동자에 대해서는, 14일내의 자택격리를 통해 관찰한 후에 출근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에 대해서도 매 직원마다 체온측정과 특이한 건강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회사에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6) 사용자가 환자와의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중국의 인력사회보장부 사무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의 방공기간의 노동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를 반포하였습니다. 이 통지에 따르면,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가 격리치료기간이나 또는 의학적 관찰기간 또는 정부에서 실시한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기업의 직원에 대해서는, 기업은 그 기간 동안에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질병이나 또는 경영상의 곤란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서는 안됩니다.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치료기간, 의학적 관찰기간, 격리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조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기업이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생산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급여의 조정, 교대근무, 작업시간의 단축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7) 업무재개 이후의 탄력적인 근무제도의 활용

1) 기업의 업무재개 후에도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회사로 돌아오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와 회사에서 부여하는 복리휴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는 2월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은 일반주말과 같은 기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휴무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얻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업무량과 범위 시간을 특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지시하면서 수시로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하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그 것이 연락을 잘 유지하라는 통상적인 주의사항의 환기라고 하더라도 재택근무 지시로 인정되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2) 북경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긴 시간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安排待岗)을 내리고 기본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북경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의 “전염병 방공기간의 노동관계의 안정 유지를 잘 하기 위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疫情防控期间维护劳动关系稳定有关问题的通知》(京人社劳字[2020]11号)에 따르면, 직원의 업무복귀 시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기업은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대기발령을 낼 수 있고, 북경시 최저임금표준의 70%이상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2. 형사법적 주의사항

(1) 사스가 한창이었을 2003년 5월 13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돌발 전염병 상황 등의 재해의 예방과 통제를 방해하는 것에 관한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구체적인 법률 응용의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办理妨害预防、控制突发传染病疫情等灾害的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반포했는데, 이를 통해, 전염병 상황에 발생한 경우에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액 등의 위생용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악용하여 국가의 전염병 등의 재해발생 기간중의 예방, 통제 관련한 시장운영, 가격관리 규정에 위반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심각하게 시장을 교란한 경우, 위법한 소득의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기타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불법경영죄”(非法经营罪)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량미달의 치료, 방호관련 제품, 물자를 생산 내지 판매하거나 전염병 방지에 사용되는 가짜약(假药), 함량미달약(劣药)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짜 내지 함량미달약의 생산판매죄”(生产、销售假药劣药罪)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3) 돌발 전염병 상황의 예방 내지 통제 등의 재해기간 동안에 인체건강에 관한 국가표준,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계, 의학용위생재료를 생산하거나,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러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들을 판매하여 방호, 치료기능의 부족으로 인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표준불합격의료용기재생산, 판매죄(生产、销售不符合标准的医用器材罪)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4) 한편 이미 2003년 사스때에도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비방”, “특효약”이라며 절박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가짜약을 판매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국가규정에 위반하여 염병 등의 재해의 예방, 통제 명목으로 광고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위선전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거나 위법소득의 금액이 크거나 기타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광고죄”(虚假广告罪)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5) 또한 본인 스스로 명백하게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전파한 경우는 공공 안전을 위대한 행위로 “위험방법공공안전방해죄”(危险方法危害公共安全罪)로 처벌받을 수 있고, 만일 병에 감염되었음에도 검역, 강제격리, 치료를 거부하여 전염병의 전파를 야기한 경우에 그 상황이 심각하고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과실위험방법위해공공안전죄”(过失以危险方法危害公共安全罪)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6) 돌발전염병 등의 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편집작성하거나 해당 정보가 편집작성된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이를 고의로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에는, “편집작성, 고의 전파허위공포정보죄”(编造、故意传播虚假恐怖信息罪)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하게는 전염병 상황 등의 재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제조, 전파하거나 국가의 분열을 선동하거나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거나 국가정권의 전복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분열선동죄”(煽动分裂国家罪) 또는 “국가정권전복선동죄”(煽动颠覆国家政权罪)라는 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7) 한편 중국은 “인터넷 단체방 정보서비스관리규정”《互联网群组信息服务管理规定》에 따라 단체 대화방 방장에게 단체방에 게시되는 내용들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방 방장이 회원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 유언비어, 내부자료, 음란, 약물, 폭력관련 내용,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포되기 전의 홍콩, 마카오, 대만등과 관련한 뉴스, 군사자료, 국가기밀과 관련된 문건, 출처가 불명확하고 위조의 의심이 있는 경찰을 음해하거나 모욕하는 동영상,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위반한 정보 등을 단체방에 게재해서는 안됩니다. 단체방장은 본 사태에 있어서 유언비어로 인정될 수 있는 정보가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계약법상의 주의사항

중국의 민법총칙 제180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민사의무를 이행하기가 불능인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률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불가항력은 예견가능, 회피가능, 극복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법 제117조 제1항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면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기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는 객관적인 요건 측면에서는 불가항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려면 이번 전염병 사태와 계약의 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이행의 불편,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비용증가, 전염병 감염에의 두려움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에 따라 별도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태에 대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불가항력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한 내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내 기업들은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받아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관련 중국 국제 상회 링크: <https://mp.weixin.qq.com/s/LMLRcEDnwo0-9izY4MhqTQ>

---

## III. 시사점

---

1.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 세무당국은 2월 세금 신고기한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였고, 국가이민관리국도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의 비자연장과 관련한 긴급업무 통지를 반포하였고, 인민은행 등 자본시장 관련 기관들도 본 사태기간 동안의 원활한 시중자금 유통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는 등 중국은 모든 중앙부처들이 금번 사태와 관련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전염병의 확산 상태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조치에 차이가 있는 만큼, 중국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한국인들은 관할지역의 정책 동향을 해당 지방정부의 SNS 공식계정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각 기업은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에 휴무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 사실확인서로 징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는 이러한 전염병 사태 발생에 대한 응급 예비방안을 마련해서 게시하고, 소독제, 마스크, 비접촉 체온계 등을 비치하고 특히 엘리베이터나 창문이 없는 회의실 같은 통풍이 되지 않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규칙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방문자들에 대한 체온측정과 소독 기록을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사무실을 환기시켜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3. 이번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안 그래도 2020년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신년 벽두 부터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특히 춘절기간을 전후해 발생하여 중국은 현재 생산과 소비 두 분야가 모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지방정부는 업무중단 기간에도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특히 북경시 인사국은 시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방공전염병 개학연기 기업직원 미성년자녀 보호기간 급여대우 문제에 관한 통지” 《关于因防控疫情推迟开学企业职工看护未成年子女期间工资待遇问题的通知》를 통해, 개학의 연기로 북경의 매 가정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집에서 미성년자녀를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한 정상적인 노동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 그 기간의 급여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휴무 기간 동안의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공장가공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기업들의 자금압박이 훨씬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업들은 자금흐름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4. 본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중국의 SNS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구류 등의 행정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2003년 사스때는 정보가 부족하여 불안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가짜 뉴스를 포함한 정보가 너무 넘쳐나 공포감을 확대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계신 한국분들이 중국의 SNS 단체방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파하거나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는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중국 쪽에 전달하는 데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전염병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법률법규의 준수를 통한 전염병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노동자들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기업의 준법의무 이행의 핵심사항이고, 지금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각 소재지 관계당국의 방역과 업무재개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CONTACT



**강희철 변호사**  
02-528-5203  
hckang@yulchon.com



**이명재 외국변호사**  
02-528-5893  
mjlee@yulchon.com



**변응재 변호사**  
02-528-5797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86-185-0085-2518  
whuh@yulchon.com



**김중부 외국변호사**  
02-528-5043  
zfjin@yulchon.com



NA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CHAMBERS ASIA-PACIFIC AWARDS

**Yulchon LLC**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